

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- 23호
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19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

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“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”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(단순노무 종사자)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